



LEGAL UPDATE

화우 보험 뉴스레터 2026-2호

Apr. 2026

보험 판례

GA 소속 보험설계사의 허위 금융상품 가입 권유행위에 대한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최근 판례 및 시사점
-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2464 판결 -

1. 사안의 개요

- 피고 보험회사는 법인보험대리점(GA, 이하 '소외 회사')을 자회사로 설립하고 보험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음. 이후 피고 보험회사의 상호는 합병 등을 이유로 변경됨
- A는 피고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할 당시 원고를 알게 되었음. A는 그 후 소외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옮겼는데, 원고에게 피고 보험회사의 상호 변경 전 기업로고가 인쇄되어 있는 '재정안정계획서'라는 제목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허위의 금융상품(이하 '이 사건 금융상품')을 '일반 보험상품이 아니라 회사 내부적으로 VIP 고객에게만 특별히 판매하는 1년형 단기 채권형 예금'이라서 연 12%의 단기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 사건 금융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음(이하 '이 사건 기망')
-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금융상품에 가입하기로 하고 A가 알려준 피고 보험회사의 변경 전 상호와 유사한 명칭의 법인 명의 계좌로 함께 1억 2,000만 원을 보험료 명목으로 송금하였음. A는 보유하고 있던 변경 전 상호와 로고 등이 기재되어 있는 피고 보험회사 명의의 보험증권 파일을 이용하여 원고를 보험계약자로 하는 보험증권 2매를 위조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음
- A는 수차례에 걸쳐 원고를 비롯한 8인의 피해자들을 이 사건 기망 또는 그 유사한 방법으로 기망하여 함께 12억 6,094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음(확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5. 10. 선고 2023노1831 판결)

2. 쟁점

- GA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가입자 모집 과정에서 허위의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여 돈을 편취한 경우,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A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융상품의 가입을 권유하고 원고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 보험회사의 금융상품계약 등의 대리중개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마치 그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음
 - A가 제시한 '재정안정계획서'에는 피고 보험회사의 합병 전 기업로고가 인쇄되어 있고, 이 사건 금융상품을 '보험계약으로 칭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보험료납입', '해지환급금' 등에 관한 안내문구가 다수 기재되어 있어 외형상 이 사건 금융상품은 피고 보험회사가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일종으로 보임
 - A는 원고에게 피고 보험회사의 변경 전 상호와 유사한 법인 명의의 계좌로 가입금을 입금하도록 안내하였고, 가입금 지급 이후 교부된 보험증권 등은 피고 보험회사의 변경 전 상호와 로고가 기재된 채 정교하게 위조되어 있음
 - A는 피고 보험회사 소속의 보험설계사로 활동할 당시부터 원고와 알고 지냈고, 피고 보험회사 영업조직이 분사되어 소외 회사가 설립됨에 따라 이 사건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할 당시에는 소외 회사에 소속되어 있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금융상품을 원고에게 판매한 것은 A가 피고 보험회사 업무를 수행하며 쌓은 신뢰관계에 기반한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기망에 피고 보험회사의 변경 전 상호와 로고 등을 사용하여 위조된 여러 문서가 이용되었는데, 그러한 위조가 가능했던 경위, 위조된 각 문서의 외형과 내용, 이 사건 기망행위 전후의 사정, A의 사기행위가 피고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할 당시 시작되어 소외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재직할 때까지 약 2년에 걸쳐 지속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보험회사가 A의 선임과 그 업무 감독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하였다거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
- 또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¹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 A가 원고에게 제시한 재정안정계획서에는 피고 보험회사의 합병 전 기업로고가 인쇄되어 있고, 이 사건 금융상품을 보험계약이라고 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 및 관련 협회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음
 - A는 피고 보험회사의 변경 전 상호와 유사한 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원고에게 위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하였음
 - 원고가 이 사건 금융상품에 가입한 날인 2023. 4. 12은 피고 보험회사의 상호가 변경된 날로부터 불과 4개월 후이고, A가 소속된 소외 회사는 피고 보험회사의 자회사이기는 하지만 별개의 법인이며, 상호 변경에 따른 후속작업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변경 전 상호가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¹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의 행위가 판매대리·중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이 사건 금융상품이 예금상품의 외관을 일부 띄고 있는 점은 있으나, A가 원고에게 제시한 재정안정계획서에는 이 사건 금융상품이 보험상품이라고 인식할 만한 기재가 있고, 원고가 A를 알게 된 시점이 A가 피고 보험회사 소속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할 때라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금융상품이 피고 보험회사의 금융상품이라고 인식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다만,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원고에게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 보험회사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음

4. 시사점

- 이번 판결은 법원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을 적용할 때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줌.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은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무과실에 가까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는 판시에서 잘 드러남
- 이번 판결의 판단 내용 중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의 요건에 관하여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GA 소속 보험설계가 보험판매 과정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은 보험설계사가 보험회사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허위의 금융상품(특히 예금)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편취한 사안에도 적용되고, 원고가 위조 사실을 모른 이상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구체적 손해액은 원고가 지급한 보험료에 책임제한(60%)을 적용한 다음 A가 변제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됨
- 보험회사로서는 ① 보험회사 소속 설계사 외에 GA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도 준법교육이 주기적으로 충분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② GA가 그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위법행위를 미연에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통제/감시시스템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음. 이를 위해 보험회사와 GA가 상호 협력할 필요가 있음. 이런 사항은 향후 보험회사의 면책 또는 책임제한 판단에서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음